

법학전문대학원 국제경연대회 참여에 관한 지원기준

제정 2011.11.17.

개정 2017.09.06.

개정 2018.05.02.

개정 2018.10.24.

국제경연대회에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서울대 대표팀으로 참여할 경우에 아래와 같은 기준에 따라 참여 학생(들)과 지도교수에게 재정지원을 제공하기로 한다.

1. 지원 자격

지원을 받는 “서울대 대표팀” 소속원이 되기 위해서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 중에서 동 대학원 소속 지도교수가 정하는 선정 절차에 따라 공개적으로 선발된 팀 구성원이어야 하며, 지도교수는 “서울대 대표팀”의 위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국제경연대회에 참가할 때까지 책임지고 서울대 대표팀을 지도하여야 한다.

“서울대 대표팀”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팀 구성원 대표가 지도교수의 승낙을 받아 활동계획 및 대회 참가 계획을 작성하여 학생지원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회 참가 이후 위 대표는 지도교수의 자문을 받아 “대회참가 결과 보고서”를 학생지원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지원 내용

제1항의 절차에 따라 학생(들)이 서울대 대표팀으로 인정된 경우 학교는 위 국제경연대회의 왕복항공료, 등록비 및 대회기간 동안의 체류비를 합한 금액을 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고, 지도교수가 동행할 경우 지도교수의 왕복항공료 및 체류비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내예선의 등록비는 지원하지 않으며, 대회기간은 실질적인 대회 참가일의 직전일부터 종료일의 다음 날을 의미하고, 왕복항공료는 economy class의 실제 비용을 기준으로 한다. 대표팀이 대회 준비 및 출전과 관련하여 교내외의 다른 지원을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 이를 고려하여 본 기준에 따른 지원 여부 및 금액을 정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학생지원위원회에서 정한다.

3. 기타

국제경연대회 참여와 관련된 지원신청은 해당 국제경연대회의 본선 개최일 6개월 전까지 할 수 있다.

부칙 <2011.11.17.>

이 기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9.6.>

이 기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5.2.>

이 기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0.24.>

이 기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